

(주)마루요양원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대상

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자중 시설급여자로한다.

계약기간

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등급 갱신 시 재계약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계약목적

본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의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계약내용

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.

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

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 및 『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세부사항』에 따른다.

기타비용부담

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나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

②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급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

내부 회의를 거쳐 변경된 비용에 대해 서면 또는 유선,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이 속한 익월부터 적용하도록 한다.

의무사항

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
②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
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입소자의 의무

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(계좌이체 · 카드결제 또는 현금)

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신원인수인 및 보호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·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

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②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③ 입소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④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계약의 해제

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시설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마루요양원 2025년 급여 수가 정보(공동생활가정)

(주)마루요양원

공단 급여 수가 (2025.01.01 ~ 2025.12.31)

단위 : 원 / 일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일반	72,480 원	67,250 원	62,000 원	62,000 원	62,000 원

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

일반(20%)	감경(12%)	감경(8%)	기초(0%)	의료(8%)
20 %	12 %	8 %	0 %	8 %

구분	수급자격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일반	일반(20%)	14,496 원	13,450 원	12,400 원		
	감경(12%)	8,697 원	8,070 원	7,440 원		
	감경(8%)	5,798 원	5,380 원	4,960 원		
	기초(0%)	0 원	0 원	0 원		
	의료(8%)	5,798 원	5,380 원	4,960 원		

비급여 수가 (2024.01.01 ~ 현재까지)

청구항목	금액	비고 (외출,외박제외)	
① 식사재료비	3,000원	(1식) 기준으로 계산 3,000원*3식*30일 = 270,000원	
③ 이,미용비	5,000원	(필요시) 기준으로 계산	
④ 경관유동식	3,000원	(1식) 기준으로 계산 3,000원*3식*30일 = 270,000원	
⑤ 간식비	500원	(1식) 기준으로 계산 500원*2회*30일 = 30,000원	
⑥ 기타비	수급자 별로 계산	등급외	1일 60,000원